

발송번호: 9-5-2023-002410626

발송일자: 2023.01.05.

제출기일: 2023.03.05.

심사관	파트장	팀장	국장	보고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원인성명 구수한 (특허고객번호: 420220508231)
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0길 47, 401호 (양재동, 하이랜드빌)

대리인성명
주소

출원번호 40-2022-0138371
상 품 류 제 28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-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.
-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핏터블
Fitable

[거절이유]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'핏터블'과 'Fitable'이 병렬로 결합된 표장으로 양 표장 모두 사전상 의미가 없는 조어이나, '들어 맞을 수 있는, 끼울 수 있는'의 의미가 있는 영단어 'Fittable'과 호칭 등이 유사하여 아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'들어 맞을 수 있는 보호대, 잘 들어 맞는 보호대' 등으로 직감될 수 있어 지정상품의 성질표시(품질, 용도 등)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으며,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 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 지정상품 : 전부. 끝.

2023.01.05.

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

심사관 김미경

김미경 

1.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(특허청 예규)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
2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<http://www.kipris.or.kr/>)」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☎042-481-8107(대표번호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허로(www.patent.go.kr) 또는 특허청(www.kipo.go.kr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문산동, 정부대전청사)